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(18.7.1)

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시행지침



목 차

I. 기본 방향1
II. 지원 요건 ······ 4
III. 지원 내용 ·······5
IV.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지원금 산정방법 ····· 9
V. 기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■ 서식18

I. 기본 방향

① 추진배경

-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른 **근로시간 단축 기업** 및 **조기** 단축 기업*의 지원을 강화
 - * 기업규모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주 52시간으로 조기에 단축한 기업

◈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

- ① 연장.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(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)
 - ▲ 300인 이상: '18.7.1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'19.7.1.부터 시행),
 - ▲ 50~300인 미만: '20.1.1, ▲ 5~50인 미만: '21.7.1
- ② **특례업종 축소**('18.7.1, 26개 → 5개): 특례제외업종은 '18.7.1일부터 주 68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
-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근로시간 단축제 하에 **주 근로시간 단축제** 기업에 대한 유형을 추가
- ❖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
- 1. 교대제 도입 확대: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- 2. 근로시간 단축제
- ① 실 근로시간 단축제: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-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: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
- 3. 일자리 순환제: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- 동 지침에서는 **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**을 규정
 - 동 지침은 "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" 개정일로부터 적용됨
 - ※ 다만, 2018년 3월 1일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소급 지원

[2] 지원 체계

<요건심사방식(주 근로시간 단축제 유형)>

- **조기단축 기업(주 52시간)*** 및 **법정근로시간 준수 기업****에 대해서는 요건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
 - 또한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버스 업종이 근로시간 내에서 단축할 경우도 요건심사 방식으로 운영
 - * 기업규모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주 52시간으로 조기에 단축한 기업
 - ** ① 주 52시간으로 단축: ▲ 300인 이상: '18.7.1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'19.7.1.부터 시행), ▲ 50~300인 미만: '20.1.1, ▲ 5~50인 미만: '21.7.1 ② 주 68시간으로 단축: 특례제외업종('18.7.1)

특례존치(5개)	특례제외(21개)+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
	①보관 및 창고업,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,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,
①육상운송업(「 여객자동차	④소매업, ⑤금융업, ⑥보험 및 연금업,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
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	⑧우편업, ⑨전기통신업, ⑩교육서비스업, ⑪연구개발업, ⑫시장조사 및
운송사업 제외), ②수상운송업,	여론조사업, ⑬광고업, ⑭숙박업, ⑮음식점 및 주점업, ⑯영상·오디오
③항공운송업, ④기타 운송	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⑰방송업,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,
관련 서비스업, ⑤보건업	⑩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, ⑳사회복지서비스업, ㉑미용·욕탕 및 유사
	서비스업

○ 법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장* 및 조기단축사업장(요건심사방식)

*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단축 및 특례제외업종 주 68시간 단축의무 ('18.7.1)

① 사업계획수립	② 주 52시간 단축(주68시간 단축) 및 신규채용	③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(제도도입일 다음달부터 3개월 후)	
고용노동부 (고용정책총괄과)	사업주(300인 이상 사업주, 특례제외업종 사업주, 조기단축 사업주)	지방노동관서 (고용센터)	
4 지원금 지급	5 지도·점검		
지방노동관서 (고용센터)	고용센터 및 근로감독부서		

<참고: 공모방식(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유형)>

- 법정근로시간단축과 관계없이 **법 내에서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**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, 기존 공모방식*으로 운영
 - * 현행 교대제 개편, 일자리 순환제, 실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(예: 68→60시간, 52→50시간), 특례제외업종이 법정근로시간(68시간) 내에서 단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운영

<지원 수준>

	7 8	임금보전	
	구 분	1명 당, 1개월	일, 최대금액
비	우선지원 대상기업	80만원, 1년	40만원, 1년
제 조	중견기업	40만원, 1년	40만원, 1년
업	대규모기업	40만원, 1년	
ᅰ	우선지원 대상기업	80만원, 2년	40만원, 2년
제 조 업 —	중견기업	40만원, 2년	40만원, 1년
	대규모기업	40만원, 1년	-

- 현행 교대제 개편, 일자리 순환제, 실 근로시간 단축제(기존 공모방식)
 - * 특례제외업종이 68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도 포함

① 사업계획수립	② 사업참여 신청서 (계획서 포함) 제출	③ 사업참여 신청서(계획서 포함) 심사 및 승인	
고용노동부 (고용정책총괄과)	사업주(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사업주)	고용센터	
④ 심사결과 통보	5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	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	
고용센터	사업주	사업주	
기 장려금 지급 및 지도 . 점검			
고용센터			

Ⅱ. 지원 요건

- ①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·단체 협약 등을 제·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
 - * 제도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
 - 조기단축기업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
- ②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**단축**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**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**로 유지되어야 함
- ③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(조기단축)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(조기단축)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4~6개월 전까지의 또는 직전 3개월간*의 월평균 피보험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하여야 함
 - 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시 선택 가능(다만,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동일해야 함)
 - ** 예)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7.1일 도입시 8~10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1~3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비교도 동일한 기간(1~3월)로 산정함
- ④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전 근로시간 관리는 수기 관리 방식도 인정가능하나,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후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
 - * 1회차 지원금 단위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수기에 의한 방식을 인정
 - * 업종 및 직종의 특성상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가 곤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기에 의한 기록 인정
-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최저임금액 이상*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
 - *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에 따라 최저임금액 기준 요건(110→100%) 완화

III. 지원 내용

Ⅱ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

◆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법 기준(우선지원 대상기업, 대규모 기업)의 지원체계에서 근로기준법 기준(상시근로자 수)으로 개편

ル リコョエ	증가	근로자 인건비	임금보전							
상시근로자 수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									
500인 초과	6	0만원, 1년	-							
300인-500인	제조업	80만원, 2년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40만원, 2년						
	기타업종	60만원, 1년	기타업종	40만원, 1년						
300인 미만	제조업	80만원, 2년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40만원, 2년						
	기타업종	80만원, 1년	기타업종	40만원, 1년						

-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300인 이상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* 300인 이상 기업 지원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여부를 확인(고용보험시스템에 업로드 예정) 후 지원
- 500인 초과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월 60만원 1년 지원 임금보전: 지원 불가
- 300인~500인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월 60만원, 1년, 제조업종은 80만원 2년 지원
 - 임금보전: 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
- 300인 미만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제조업은 80만원, 2년, 비제조업은 80만원 1년 지원
 - 임금보전: 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

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

*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

사시그	ᄓ	증가근로자 인건비	임금보전			
る 小こ	·로자 수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				
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	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/	ΛΟΠΙΟΙ ΟΙ∃			
300년 여정	국네세지합당	이후 40만원, 2년	40만원, 2년			
	제조업 및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/	AUUFOI SIĦ			
20001 11111	특례제외업종	이후 80만원, 3년	40만원, 3년			
300인 미만	기디어조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/	AUUFOL DIE			
	기타업종	이후 80만원, 3년	40만원, 3년			

○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

- 증가근로자 인건비: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,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
- 임금보전: 월 최대 40만원, 2년간 지원

○ 300인 미만 기업

- 증가근로자 인건비: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, 법 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
- 임금보전 :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최대 40만원

○ 지원기간

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
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
- * 49인 이하 기업은 법정시행일이 '21.7.1.이므로 '18.7.1.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

※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

Al-	기그리다 스	법정근로시간 단축	52시간 조기단축				
ö	시근로자 수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, 최대기간					
	ᄌᆌᄀᆯᆉᆝᇬᅯᆈ	60EFOL 114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				
500인 초과	증가근로자 인건비	60만원, 1년	/이후 40만원, 2년				
	임금보전	40만원, 1년	40만원, 2년				
	ᄌᄭᄀᆯᅚᅡᇬᅯᄞ	COULOI 114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				
300인~500인	증가근로자 인건비	60만원, 1년	/이후 40만원, 2년				
	임금보전	40만원, 2년	40만원, 2년				
	ᄌᄭᄀᄀᅚᅡᇬᅯᄞ	0ΛΠ Ι ΟΙ 1Ι∃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				
300인 미만	증가근로자 인건비	80만원, 1년	/이후 80만원, 3년				
	임금보전	40만원, 2년	40만원, 3년				

○ 500인 초과 기업 임금보전

: 임금보전 지원 실시(월 최대 40만원, 1년)

○ 임금보전 지원 범위 확대

: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임금보전 실시

○ 조기단축 기업 지원 기간

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2년간 지원
- * 49인 이하 기업은 법정시행일이 '21.7.1.이므로 '18.7.1.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는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60만원/100만원을 지원하고, 시행일 이후는 40/80만원 지원

-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시간 단축도 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지원
 -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시간 단축이란 68시간~52시간 사이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며, 52시간 내에서의 단축은 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지원
 - * 특례제외업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란 '18.7.1. 특례제외로 인해 68시간 으로의 단축을 의미
- ❖ 예시(노선버스업종에 대한 적용)
- 1. 법정근로시간 내의 단축(66→53): 주 근로시간 단축제에 의해 지원, 요건심사방식
- 2. 법정근로시간 단축(70→66): 주 근로시간 단축제에 의해 지원, 요건심사방식
- 3. 조기단축기업(66→51): 조기단축기업의 지원례에 의해 지원, 요건심사방식
- 4. 52시간 내의 단축기업(52→50): 실 근로시간 단축제에 의해 지원, 공모방식

IV.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지원금 산정방법

□ 조기단축 기업 판단

요건	검토 내용
① 조기단축 시행	►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정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 - (업종)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, 특례제외 업종(21개) 해당 여부 - (상시근로자 수) 조기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1일 평균 근로자 수 * 예) 상시근로자 312명 시내버스업체의 법정시행일은 '19.7.1.
	► 노·사간 협약에 따른 조기단축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
	▶ 조기단축일이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단축했는지 확인
② 근로자 과반수 동의	►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
③ 노·사간 협약	► 노·사간 협약서(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)에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
④ 근로시간 단축	► 조기단축일이 속한 달의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또는 직전 3개월의 전체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조기단축일이 속한 달의 다음 3개월을 비교하여 기업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하였는지 확인

❖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 발급

- * 근로감독 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와 동일 효력 발생
- 일자리 함께하기 조기단축 사업장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해, 사업장의 신청(붙임1)으로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 발급(붙임2) 가능
- 지방관서는 **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**에 **처리결과**를 사업주에게 **서면으로 통지**
-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
- 고용센터는 **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명단을 근로감독부서와 즉시 공유**하고, **근로** 감독부서는 '확인서 발급 사업장 명단'을 총괄·관리
- 사업주는 동 확인서로 **타 부처의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신청 가능**

2 상시근로자 수 판단

-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에 의해 판단
 - *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 적용일 기준으로 1회차 지원금 지급시 한번만 판단,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조기단축일 기준으로 판단
- ❖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)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(이하 '산정기간'이라 한다)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

◎ 상시근로자 수 = <u>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</u>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

○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다툼이 있을 경우 **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**의 **총괄팀**을 통해 확인

③ 근로시간 단축 요건 충족여부

- 기업의 **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** 근로자의 **주 평균 근로시간(⊕)**이 **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**로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
- 단축 시간 =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4~6개월 *까지의 주 평균 근로시간()) -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단위 주 평균 근로시간())
 - 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시 직전 4~6개월 전 또는 직전 3개월간으로 선택 가능(다만,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동일해야 함)
 - ※ 주 평균 근로시간은 개개인별로 산출하지 않고 기업전체의 근로시간을 **피보험자 수**로 나누어서 산정
 - ※ 주 평균 근로시간은 월 평균 근로시간을 4.345로 나누어서 산출

<예 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7.1일인 경우

-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단축 시간 = [(1월+2월+3월 주 평균 근로시간)/3] - [(8월+9월 +10월 주 평균 근로시간)/3]

◇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

		근로시간										
		도달	입 전 [⊕] (고	<u>1</u> 정)				도입 후 ^②)			
	1월	2월	3월	합계	3개월	8월	9월	10의	하네	3개월		
	(4월)	(5월)	(6월)		평균	0결	9결	10월	합계	평균		
기업전체												
합계 A												
근로자 1인당												
월평균®												
근로자 1인당					(3)					(4)		
주평균©					73					<u>u</u>		

<작성방법>

- * B = A/피보험자 수, *C =B /4.345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**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,「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」과 동일한 기준(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**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④ 즁가근로자 수 산정

- (지원인원) 증가근로자 수
- 중가근로자 수 =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평균 근로자 수) -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4~6개월* 까지의 평균 근로자 수)
 - 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시 직전 4~6개월 전 또는 직전 3개월간으로 선택 가능(다만,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동일해야 함)
 - ※ 제도 도입 전·후 각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3으로 나누어 산정. 소수점 세번째 자리이하 버리고 계산 후최종 증가근로자 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
 - → 공모에 의한 기존 사업을 신청한 경우도 '18.7.1일 이후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부터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적용

<예 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7.1일인 경우

- 증가 근로자수 = [(8월 말+ 9월 말+ 10월 말 피보험자 수)/3] -[(1월 말+2월 말 + 3월 말 피보험자 수)/3]

○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근로자 수 산정 서식 및 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

*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

3개월 월 평균 근로자											증가
		도입 전	전(고정) 도입 후					근로자수			
구분	1월 (4월)	2월 (5월)	3월 (6월)	합계	평균	8	9	10	합계	평균	
Q X	10	11	13	34	11.33	15	16	17	48	16	5
작성											

- (한도)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 으로 15시간 당 1명
- 지원인원 한도= 단축시간(⑦-딴)×제도 도입 전 재직근로자 수/15시간
 - 나 단축 시간 =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4~6개월*까지의 주 평균 근로시간⑦) -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매 3개월 단위 주 평균 근로시간⑥)
 - 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시 직전 4~6개월 전 또는 직전 3개월간으로 선택 가능(다만,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동일해야 함)
 - ※ 단축시간(Ϡ-Ϣ)은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을 통해 확인
 - ※ 단축시간(ઋ-⑭)은 소수점 세번째 자리이하 버리고 계산 후 지원인원 한도는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계산

<예 시 >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20.22명, 단축시간의 합이 4.55시간인 경우: 7명

- (4.55×20.22명=92.001) ÷ 15시간 = 6.1334
- 지원인원한도는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7명
 - (기간 및 주기) 지원 기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, 지원기간은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산정

<예 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'18.7.1일인 경우

- 제도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 후인 11월에 1회차 지원금 신청
 - ① 1회차: '18.11월, ② 2회차: '19.2월, ③ 3회차: '19.5월, ④ 4회차: '19.8월

○ (기간 및 주기) 지원 기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, 지원기간은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산정

<예 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'18.7.1일인 경우

- 제도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 후인 11월에 1회차 지원금 신청
 - ① 1회차: '18.11월, ② 2회차: '19.2월, ③ 3회차: '19.5월, ④ 4회차: '19.8월

5 임금감소액 보전금액 산정

- 산정방법: 단축 전 급여총액의 근로시간 비례금액(기준임금)을 단축 후 3개월 급여총액과 비교하여 개개인의 임금보전분 산정
 - * 노사합의 등을 통해 **개인별 임금보전액**을 **정액** 또는 **정률**로 지급하기로 정해 **개인별 월별 임금보전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**에는 동 서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, 노사합의문 및 임금대장 등으로 지급 확인

임금보전금액 = 단축 후 급여^① - 단축전급여^②
$$\times [\frac{단축 후 총근로시간③}{단축 전총근로시간④}]$$

- ①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평균 급여
- ②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전년도의 월평균 급여
- ③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 평균 근로시간 (산정방법): 소정근로시간+(1.5×초과근로시간*)
 - * '18.7.1.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의 휴일근로시간 포함
- ④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달의 전 6개월~4개월까지 또는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근로시간(산정방법): 소정근로시간+(1.5×초과근로시간*)
 - * '18.7.1.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의 휴일근로시간 포함
- ⑤ 임금보전금액은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고, 3개월분을 지급
- 임금보전분은 지원 단위기간 별로 산정하여 지급

<예 시> 7.1일 근로시간 단축시

①단축 전: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500만원,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단축 4~6개월 전 3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30시간

단숙 4~6개월 전 3개월 월 평균 소파근도시간 30시간

②단축 후 3개월(8,9,10월) : 평균 급여 470만원, 소정근로시간 209시간,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10시간

③기준임금: 500×(209+1.5×10×/209+1.5×30) = 441만원

④임금 보전 금액: 470만원 - 441만원 = 29만원

⑤지원금액: 29만원 × 0.8 = 23.2만원

⑥분기당 지원급액: 23.2만원 × 3개월

* 급여는 임금대장의 총액 통해 확인

*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정 서식

성 명	주민 등록번호	월 소정 근로시간 (a)	도입 전 [®] 3개월 평균 초근시간 (b)	도입 후 ² 3개월 평균 초근시간 (c)	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(d)	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(e)	기준임금 (p)	임금보전 금액 (f)	지원금액 (g=f*0.8)
홍길동									

<작성방법>

* 임금보전금액(f)=
$$e-\left[d imesrac{\left(a+1.5c
ight)}{\left(a+1.5b
ight)}
ight]$$
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 개월**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」,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과 동일한 기준(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**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 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사업주(대표): (인)

- (지원금액)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% 한도로 월 최소 10만원, 최대 40만원을 지원
- (지원한도) 증가근로자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
 - 다만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버 스업종 에 한해 증가근로자수 1인당 기존재직자 20인까지 지원

V. 기타

① 지원제외 근로자

-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 - 가.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- 나.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- 다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1호에 따라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1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○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**최저임금 100% 미만의 임금**을 지급받은 근로자. 다만, 해당 근로자가 「최저임금법」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
- 비상근촉탁근로자.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
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-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. 다만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

② 지원제외 사업주
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)
- 부동산업,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 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
-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.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
 - 가.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 - 나.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 - 다.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 - 라.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받은 사업주인 경우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

③ **제출 서류**

지원내용	제출서류
조기단축기업 지원	► 근로시간 조기단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신규채용 인건비 지원	 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노·사간 협약서(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) ▼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) 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자명부, 임금대장 등) ▼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 ▼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수 산정 서식 ▼ 신규 채용한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
임금감소분 지원	▶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금액 산정 서식▶ 지원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

※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(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) 등 제출 서류의 원자료는 장려금 수급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함

④ 적용대상

○ '18.3.1일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'18.7.1일(고시 개정일) 이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적용

붙임1

주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

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2호 서식]

「고 용창출장려금(□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)」	지급 신청서
※ 디쪼이 자서바버은 이고 자서됩시기 바라니다. ㄷ에느 테다디느 고에 "./" 표시로 하니다.	(1쪼)

	고 작성하시기 마랍니다. □에는 해당되는	를 곳에 "√" 표시들 압니나.	(1等)				
1. 사업장 개요							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				
디모		OL TO	코 드()				
대표자		업종 ^①	항목명()				
	□ 500명 초과		,				
상시 근로자수	□ 300명 이상 500명 미만	상시 근로자 수 ^②	명				
경시 근도사구		경시 근로자 구	70				
	□ 300명 미만						
주 근로시간	년 월 일						
단축일		보험료 납부	□ 해당 □ 비해당				
(조기단축일)	(년 월 일)						
4대 보험 가입	□ 해당 □ 비해당	임금체불 명단 공표 시업주 ³	□ 해당 □ 비해당				
<u>국제 고급 기급</u> 국가, 자치단체,		300명 초과					
	□ 해당 □ 비해당		□ 해당 □ 비해당				
공공기관 여부		상호출자제한기업 ^⑤ 여부					
무농산업 능 중소	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	□ 해당 □ 비해당					
제2조에	너 정한 업종 [®] 여부						
에 그 ᄌ		은행					
예금주		계좌번호					
담당자	성명	전화번호					
2. 신청 내용: 사업	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	족인척이 포함되지 않았음을	을 확인함 🗆				
	[어린시 요란	신청	내용				
^	h업참여 유형	신청인원	신청금액				
□ 법정근로시간 단축							
□ 조기단축	증가 근로자	명	원				
□ 법정근로시간 단축	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	명	원				
(노선버스 [®] 특례)		_					
□ 조기단축	.1.51.51.51						
(노선버스 ^① 특례)	신청기간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까지				
3. 조기단축 기업	미경우						
	ㅋ 경ㅜ 인서 발급 희망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				
	^{인지} 월급 의당 어구 함께하기와 다른 고용창출장						
	지급받을 수 있으며, 이미 수	급한 경우 상계처리할 수 🤉	겠음 [®]				
지원금 수급 여부		□ 예 □ 아니오					
중복지원시 상계처	리 농의 여부	□ 예 □ 아니요	<u>-</u>				
 「고용창축장려금 ·	고용아정작려금의 시청 및 저	지근에 과하 규전 제19조제	세1항에 따라 산기와 간이				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「고용창출장려금」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
'고용상술상더금_	」 시급을 신청압니다.						
		년 월 일 신경	청인(대표): (인)				
	○○지바고요노5	통청(○○지청)장 귀하					
		50(UUNIO/O TIP					
첨부서류 1.근로계약	^{ᆤ서 2.} 월별임금대장 3.임금지급증빙서	류 4. 전자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	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				
확인할 수	있는 서류, 5. 1~4이외에 고용노동 !	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[®]					
접수번호	접수 연월일						
		71.71	결재 연월일				
선람 담당	팀장	과장 소장					
		210mm×297mm[백성	·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				

작성방법

- ㅇ 업종
- ① 표준산업분류표 5자리 코드 기준으로 작성
- ㅇ 상시 근로자 수
-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)
-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(이하 '산정기간'이라 한다)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
- ㅇ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
- ③ 「근로기준법」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ㅇ 공공기관
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알리오 시스템 (www.alio.go.kr)을 통해서 확인
- ㅇ 상호출자제한기업
- ⑤ OPNI 기업정보포탈 (http://groupopni.ftc.go.kr)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확인
- ㅇ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⑥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(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)
- ㅇ 노선버스 특례 적용 업종
- ⑦ 표준산업분류표 상 49212 시내버스 운송업, 49220 시외버스 운송업
- ㅇ 지원금등의 상호조정비율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39호)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신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
- 1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: 70%
- 2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"1"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: 100%

ㅇ 첨부서류

- ⑧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
- 1.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도입 전후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, 근로자동의서, 노시협의회 회의록 등)
- 2. 시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시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)
- 3..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 등)
- 4.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시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

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

	근로시간									
	도입 전 ^① (고정) 도입 후 ^②									
	1월 (4월)	2월 (5월)	3월 (6월)	합계	3개월 평균	8월	9월	10월	합계	3개월 평균
기업전체 합계 (A)										
근로자 1인당 월평균®										
근로자 1인당 주평균©					29					(

<작성방법>

- * B = A/피보험자 수, *© =B /4.345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,「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」과 동일한 기준(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 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

3개월 월 평균 근로자									증가			
	도입 전 ^① (고정)						도입 전 ^① (고정) 도입 후 ^②					근로자수
구분	1	2	3	합계	평균	8	9	10	합계	평균		
여/시	10	11	13	34	11.33	15	15	17	46	15.66	4	
작성	작성											

<작성방법>

- ① 도입 전 3개월 월 평균 근로자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** 기준으로 작성(별첨「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」,「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」와 동일한 기준(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**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 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

성 명	주민 등록번호	월 소정 근로시간 (a)	도입 전 [®] 3개월 평균 초근시간 (b)	도입 후 ² 3개월 평균 초근시간 (c)	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(d)	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(e)	기준임금 (p)	임금보전 금액 (f)	지원금액 (g=f*0.8)
홍길동									

<작성방법>

- * 임금보전금액(f)= $e-\left[d imesrac{\left(a+1.5c
 ight)}{\left(a+1.5b
 ight)}
 ight]$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 개월**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」,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과 동일한 기준(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**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 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 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붙임2

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서

제 2018 - 00지청 - 고용센터 1호

노동시간 단축 확인서

사업장명		업종	
사업자 등록번호		대표자명	
근로자수	명	전화번호	
소재지			
법정 시행일		조기단축 시행일	

귀 사는 근로기준법(법률 제15513호, 2018.3.20.)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인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보다 앞선 ○○○○년 ○○ 월 ○○일부터 노동시간 단축(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)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합니다.

※ 동 확인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조기단축기업 지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(직인)

※ 동 확인서 발급 이후, 허위 신청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주 최대 52시간 미시행 사실이 확인되면,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